‘26년 대게 성어기 불법어업 합동 특별점검 추진계획

〈 추진 배경 〉

◇ **대게 성어기를 맞아** 암컷대게, 금어기(6.1~11.30)·금지체장(9cm이하)·포획금지구역 위반 등 대게의 불법 포획·유통* **성행 우려**

* (‘26.7) 포항해경, 암컷대게 4,572마리 포획·운반·유통 일당 송치

◇ **일부해역은 대게 포획이 허용***됨에 따라 일부어선이 합법구역과 금지구역을 오가며 불법조업을 통한 **어업질서 혼란****을 야기

* 동경 131도 30분 이동수역에서 대게 포획 가능(금어기 6.1 ~ 10.31)

** 대게 조업이 가능한 수역으로 항해 후, 입항 전 경북연안(구룡포~죽변) 대게조업

◇ 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**개정***되어 **수입산 암컷대게의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**될 예정(‘27.3.23 시행)

*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유통 금지

□ **(기간해역)** ‘26.11.1. ~ ’27.2.28.(4개월간) / 동해일원*

* 대게류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, 한일 중간수역, 우범 항포구 등

□ **(참여기관)** 동해어업관리단, 지방정부(경북도, 포항·경주·영덕·울진) 등

* 점검방법 : 육·해상 점검반 운영 및 불법어획물 유통·판매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

□ **(단속방법)** 관계기관 자체 점검반 구성하여 활동, 민원 및 불법 정황 발생 시 합동단속반 구성, 상시 온라인감시팀 운영하여 입체적 단속 실시

○ **(해상)** 國·地 어업지도선은 기관별 자체 계획에 따른 운용, 교차승선·합동순시 등 협업 필요시 관계기관 적극 지원·참여 필요

○ **(육상)** 지도선 육상점검반 우선배치 및 어업지도과 자체 단속팀 구성하여 주요 항포구 및 수산시장 등 양륙·유통 단계 모니터링 실시

○ **(온라인)** 불법 수산물 온라인 TF에서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, 위반사항 시정조치 등 온라인 유통질서 확립, 필요시 오프라인 점검 병행

□ **(주요사항)** 대게 성어기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시기에 맞게 단속역량 집중을 통한 점검의 실효성 확보, 필요시 國·地 합동점검 추진